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95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 의 자 : 조계원 · 김문수 · 허성무
이성윤 · 민병덕 · 안도걸
최민희 · 서미화 · 진성준
이광희 · 임오경 · 권향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고, 국가 등은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 시 스포츠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포츠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스포츠 소외계층이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남성 중심의 체육계 관행으로 인해 선수와 지도자의 성비 불균형, 여성 선수와 지도자의 고용 및 노동에 있어서 불평등·경력단절 등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성별·종교 등 스포츠 활동 시 차별받지 않는 대상을 열거하고, 저소득층·노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스포츠 정책 수립 시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

로써 국민과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권을 확대하고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민은”을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스포츠 소외계층의”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로 한다.

제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제8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4조(국민의 권리) -----국민은 <u>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u> ----- ----- -----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u>스포츠 소외계층의</u>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u> ----- ----- ----- -----.
④ (생략)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 -----

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7. (생 략)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 략) <u><신 설></u> 12. ~ 14. (생 략) ③ ~ ⑤ (생 략)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u> 7. (현행과 같음)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1. (현행과 같음) <u>11의2.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u> 12. ~ 1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